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☐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☐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☐ 본 개정안은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사의 사회적 범주를 확대하여, 현행 조문에 규정된 어르신, 장애인, 전통상인,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, 여성, 체육인도 포함함으로써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.
- ☐ 또한 현행 조례에 규정된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☐ 마지막으로 명예시장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☐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☐ 첫 번째로,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사의 사회적 범주에 청년, 여성, 체육인을 포함하였습니다.
- ☐ 두 번째로,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- ☐ 마지막으로,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- 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☐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☐ 감사합니다.